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전후대비표

〈지침관리팀〉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I. 대응체계			
3	1. 총칙 가. 법적 근거 ○ 전세계적인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등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 중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7호) 제1호가목]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23.5.5.)와, 국외 주요국 정책 동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험도 하락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격리 권고 전환 나. 대응방향 ○ '자율' 및 '권고' 기조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1. 총칙 가. 법적 근거 ○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온전한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급감염병'으로 대응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8호) 제2호가목]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23.5.5.)와, 국외 주요국 정책 동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험도 하락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격리 권고 전환 나. 대응방향 ○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되 고위험군 보호 및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속 및 일부 지원 유지 ○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23.5.11.)] 1.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백신·치료제 등 대응 수단 확보 및 의료대응 역량 향상 등 국내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등 고려하여 위기단계 하향 조정 2.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 조기 완화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마스크) 의료기관(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보호)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및 대면면회시 취식 허용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3. 의료대응 및 국민 자원 체계 지속 (재택치료 지원체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기존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 (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 (지원체계) 치료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지속 4. 기타 (감시·통계) 주단위 발표로 전환 (재난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23.8.23. 발표, 8.31. 시행)] 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지정(8.31.) 2.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되, 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허용 3. 일반의료체계 안착 노력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국민지원 일부 유지 (외래진료)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종료) (병상)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 지속 (진단검사)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 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방역물자) 지원 종료 (치료비) 중증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치료제 및 예방접종)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 4. 기타 (감시·통계) 양성자 감시(표본감시)·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 (위기단계) '경계' 단계 유지 (재난대응체계) 중수본·방대본 중심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 유지	
5	나. 기관별 임무개요	나. 기관별 임무개요	- 단계조정에 따른 코로나19 병상 현황 분석을 위한 질병대응센터의 병상현황 조사 분석 임무 반영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권역별 질병대 응센터 (권역 5개소) - 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 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 - 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권역 5개소) - 권역별 방역물자 등 의료대응자원의 공동 관리·활용 지원 등 - 검역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의료 -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 코로나19 신고·보고(발생, 사망, 퇴원) 기관 -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권역별 질병대 응센터 (권역 5개소) - 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 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 - 지자체 단독수행이 불가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권역 5개소) - 권역별 방역물자 등 의료대응자원의 공동 관리·활용 지원 등 - 검역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 코로나19 환자 병상 현황 조사 분석 의료 - 코로나19 환자 등 진단 및 치료 - 코로나19 신고·보고(발생, 사망, 퇴원) 기관 - 코로나19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관리 협조 - 코로나19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6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이하 “권역센터”) ○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 정보 분석·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 대상·집단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 검역감염병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등	1)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이하 “권역센터”) ○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정보 및 환자 정보 분석·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 대상·집단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및 현장 지원 ○ 검역감염병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등 ○ 코로나19 환자 병상 현황 조사 분석	- 단계조정에 따른 코로나19 병상 현황 분석을 위한 질병대응센터의 병상현황 조사 분석 임무 반영																								
7~8	2) 시·도 즉각대응팀 ○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내 시·도 즉각대응팀을 구성(총 5~7명)하고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팀별 인원, 출동순서 및 운영방법 등(반드시 예비팀을 포함하여 계획·마련) <table><tr><th>방역관▶</th><th>역학조사</th><th>현장통제</th><th>접촉자 자료관리</th><th>행정관리</th><th>검사관리</th></tr><tr><td>1명</td><td>1~2명</td><td>1명</td><td>1명</td><td>1명</td><td>(1)</td></tr></table>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통제	접촉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2)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내 시·도 역학조사반을 10인 이상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대응팀(2~3명)’을 구성하여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팀별 인원, 출동순서 및 운영방법 등(반드시 예비팀을 포함하여 계획·마련) <table><tr><th>방역관▶</th><th>역학조사</th><th>현장통제</th><th>접촉자 자료관리</th><th>행정관리</th><th>검사관리</th></tr><tr><td>1명</td><td>1~2명</td><td>1명</td><td>1명</td><td>1명</td><td>(1)</td></tr></table>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통제	접촉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용어수정 ·시도 즉각대응팀 운영 (총5~7명) →역학조사반 10인 구성 운영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통제	접촉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방역관▶	역학조사	현장통제	접촉자 자료관리	행정관리	검사관리																						
1명	1~2명	1명	1명	1명	(1)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방역관은 사·도지사가 보건정책국·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 ▶ 질병관리청은 권역별로 현장대응팀(방역관 1명, 역학조사관 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환자관리 자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집단발생에 따른 추가 환자 또는 다수 접촉자 발생 시 지원(방역·의료·생활) 및 통제체계 운영방안 자문 - 상황평가, 긴급조치, 현장통제, 역학조사 등 적시 조사·대응	▶ 방역관은 사·도지사가 보건정책국·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 ▶ 질병관리청은 권역별로 현장대응팀(방역관 1명, 역학조사관 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환자관리 자문 -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신고 또는 인지시 집단시설 내 추가 환자 또는 다수 접촉자 발생 시 지원(방역·의료·생활) 및 상황평가에 따라 필요 시 긴급조치, 현장통제, 역학조사 등 적시 조사·대응 통제체계 운영방안 자문 상황평가, 긴급조치, 현장통제, 역학조사 등 적시 조사·대응을 위한 자문 ○ (주요업무) 사전준비→현장대응→조치사항→상황보고 순으로 필요시 대응 ▶ 사전 준비: 집단발생 규모 파악 및 역학조사·대응 시행 고지 ▶ 현장 대응: 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기관별 업무 분장 및 연락체계 구축, 역학조사, 현장통제 ▶ 주요 조치: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표준주의, 비밀주의 생활방역 시행 및 시설 방역 강화(확진자 위험도별 노출자 분리 및 환경 소독 등) ▶ 손이 자주 닿는 표면(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등을 대상으로 소독 ▶ 상황보고: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현장조사 결과 정보 공유(권역별 센터) ▶ 삭제	용어수정 현장대응팀 →역학조사반									
	<table><tr><th>단계</th><th>주요업무</th></tr><tr><td rowspan="2">사전 준비</td><td> • 시·도 현장대응팀 구성 • 확진환자·접촉자 정보를 통해 규모, 경위, 증상발생 후 동선 등 파악 • 접촉자 즉시 자가격리 조치, 유증상자는 신고 후 검사 실시 • 집단시설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대응 시행 고지 </td></tr><tr><td> • 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역학조사 계획, 우선순위 등 설정 • 업무 분장 • 역학조사: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시설·환경 관리 • 현장통제 - 시설관리(적절한 소독조치 전까지 일시 이동제한 조치)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폐기물관리 </td></tr><tr><td>조치 사항</td><td> • 확진환자 관리(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자가격리, 증상 능동감시 •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동일집단격리 시행 조정 검토 - (필요시) 시설 폐쇄, 접촉자 격리 등 조치 </td></tr><tr><td>상황 보고</td><td> • 시·도 현장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 • 사망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td></tr></table>	단계	주요업무	사전 준비	• 시·도 현장대응팀 구성 • 확진환자·접촉자 정보를 통해 규모, 경위, 증상발생 후 동선 등 파악 • 접촉자 즉시 자가격리 조치, 유증상자는 신고 후 검사 실시 • 집단시설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대응 시행 고지	• 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역학조사 계획, 우선순위 등 설정 • 업무 분장 • 역학조사: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시설·환경 관리 • 현장통제 - 시설관리(적절한 소독조치 전까지 일시 이동제한 조치)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폐기물관리	조치 사항	• 확진환자 관리(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자가격리, 증상 능동감시 •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동일집단격리 시행 조정 검토 - (필요시) 시설 폐쇄, 접촉자 격리 등 조치	상황 보고	• 시·도 현장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 • 사망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단계	주요업무										
	사전 준비	• 시·도 현장대응팀 구성 • 확진환자·접촉자 정보를 통해 규모, 경위, 증상발생 후 동선 등 파악 • 접촉자 즉시 자가격리 조치, 유증상자는 신고 후 검사 실시 • 집단시설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자료 확보 및 역학조사대응 시행 고지										
		• 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역학조사 계획, 우선순위 등 설정 • 업무 분장 • 역학조사: 환자 동선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시설·환경 관리 • 현장통제 - 시설관리(적절한 소독조치 전까지 일시 이동제한 조치)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폐기물관리										
조치 사항	• 확진환자 관리(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자가격리, 증상 능동감시 •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동일집단격리 시행 조정 검토 - (필요시) 시설 폐쇄, 접촉자 격리 등 조치											
상황 보고	• 시·도 현장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 • 사망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관련 근거 법령 「감염병예방법」 제60조(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 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다 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 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 (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5급 이 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 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 1.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 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 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 삭제	
II.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 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까지)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 ▶ 근거: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4. 제4급감염병[4-24]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COVID-19) ②삭제 ▶ 삭제 ○ 확진환자 - -----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고시 개정예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한시 시행 (’22.3.14.~별도 안내 시까지)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 ◆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부록 38 참고)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tr><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r><tr><td>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r></table>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 - 삭제 ▶ 삭제 ◆ 무료 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 PCR 검사 우선순위 해당 시 (부록 38 참고)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tr><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r><tr><td>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①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td></tr></table>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우선순위 대상 조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11	1. 확진환자 신고·보고	삭제	-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확진환자 신고·보고 삭제
13	2.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삭제	-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사망 신고·보고 삭제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5	1. 개요 2. 일반적 관리방안 3.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Ⅴ. 확진환자 관리			
19-20	1. 확진환자 관리	1. 확진환자 관리 → 삭제 가. 환자 관리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6일 차 0시)까지 격리 권고 ▶ (예시)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5. 24:00까지 격리 권고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 (참고문헌) Kim J-M, Kim D, Kim E-J.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 Public Health Wkly Rep 2022;15(14):871-2.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예시)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19 위중증환자에 한하여 치료비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 ▶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 치료비 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판)」 참조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 <table><tr><th>단계</th><th>정의</th><th>중증도 분류</th></tr><tr><td>1</td><td>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td><td rowspan="2">경증 이하</td></tr><tr><td>2</td><td>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td></tr><tr><td>3</td><td>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td><td rowspan="2">중등증</td></tr><tr><td>4</td><td>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td></tr><tr><td>5</td><td>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td><td rowspan="3">위중증</td></tr><tr><td>6</td><td>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td></tr><tr><td>7</td><td>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td></tr><tr><td>8</td><td>사망(death)</td><td>사망</td></tr></table>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단계	정의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 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증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 (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므로, 방문 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확인 필수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운영 중단 ▶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요청 및 공급, 재고관리 등 치료제 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참조	
20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상세사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참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 운영 중단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등)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삭제	- 단계 조정에 따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중단
23~24	2. 확진자 조사 가. 배경 ○ 코로나19 관련 PHEIC 해제('23.5.5) 및 국내 위기단계하향에 따라 5일 격리권고 전환으로 확진자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 개편 나. 기본원칙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2.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조사 가. 배경 ○ 코로나19가 4등급으로 조정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지속 나. 기본원칙 ○ 중증,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집중 관리	(역학조사팀)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사항은 매뉴얼 참고 참고 자료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참조 다. 확진자 조사 ○ (조사주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 실시 ▶ 격리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 (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 검사 및 신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 조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 ○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 (조사방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조사서 입	▶ 지자체 방역상황 및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관리 가능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사항은 부록40 매뉴얼 참고 참고자료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참조 다. 조사 세부내용 ○ (조사주체) 실거주지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집단 발생 조사 실시 ○ (대응) 지자체 방역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신고·인지시 노출 및 전파위험도 평가 후 판단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 ▶ 지자체별 운영중인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합동대응	-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관련 매뉴얼 부록에 포함 - 확진자 조사 삭제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력 - 확진자 자기기입 및 진술 기반  관 련 서 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평시)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적 현황 등 정보 공유 ▶ (대규모 집단발생/확진자 지속발생) 노출위험평가 후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 보고 ▶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시 지자체 판단과 역량에 따라 대응(부록 36 참고)  참고자료 [부록 36]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 시 참고 사항 ▶ 격리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자 관할 보건소로 이관 (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 검사 및 신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 조사는 실거주자 관할 보건소 담당 ○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거저질환 ○ (조사방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조사서 입 력 - 확진자 자기기입 및 진술 기반  관 련 서 식 [서식 5]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 서서	
25	라.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감염취약시설) 시설정보 및 확진자 기초정보 등 수집·공유, 확진자 발생 보고(관리부서, 보건소) - (시도/시군구) 감염취약시설(3종) 전담관리를 위한 현 구성원 합동전담대응팀 지속 운영	라.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감염취약시설) 시설정보 및 확진자 기초정보 등 수집·공유, 확진자 발생 보고(관리부서, 보건소) - (시도/시군구) 감염취약시설(3종) 전담관리를 위한 현 구성원 합동전담대응팀 지속 운영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평시)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적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 방역물자 지원 등 ▶ (대규모 집단발생/확진자 지속발생)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 역학정보 등록 및 관리, 시도 지원 요청 및 시설 지원·관리계획 마련 등 ▶ 지자체 판단과 역량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시 대응 방안 부록 36 참고  참고자료 [부록 36]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 시 참고사항	▶ (평시)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적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 방역물자 지원 등 ▶ (대규모 집단발생/확진자 지속발생)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보고대응, 역학정보 등록 및 관리, 시도 지원 요청 및 시설 지원·관리계획 마련 등 ▶ 지자체 판단과 역량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시 대응 방안 부록 36 참고  참고자료 [부록 36]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조사 시 참고사항 마. 재감염 ○ (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마지막 확진 후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마지막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사례가 아닌 경우 '재검출'로 판단할 수 있음 ▶ (출처) CDC, Common Investigation Protocol For Investigating Suspected SARS-CoV-2 Reinfection(Dec.2021)	
25	3.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3.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전체 삭제) 3. 확진자 격리 권고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가. 확진자 격리 권고 및 격리 방법 ○ 확진자의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 감염병 등급 조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격리할 것을 권고 ○ (격리 방법) 격리하는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나. 의무 입원·격리자 및 권고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① '23.5.31. 이전에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격리 의무) 및 ② '23.6.1.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 시행일 이전에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 사람(격리 권고)으로, 격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예시) '23.8.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 시행의 경우 <table><tr><th>검체채취 일</th><th>확진일</th><th>확진자신 고일</th><th>양성확인통지일</th><th>생활지원 신청</th></tr><tr><td>'23.8.30. 이전</td><td>'23.8. 30.</td><td>'23.8.30.</td><td>'23.8.30.</td><td>가</td></tr><tr><td>'23.8.30. 이전</td><td>'23.8. 30.</td><td>'23.8.30.</td><td>'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td><td>불가</td></tr><tr><td>'23.8.30. 이전</td><td>'23.8. 30.</td><td>'23.8.31. 이후</td><td>'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td><td>불가</td></tr><tr><td>'23.8.30. 이전</td><td>'23.8. 31.</td><td>'23.8.31. 이후</td><td>'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td><td>불가</td></tr><tr><td>'23.8.31. 이후</td><td>'23.8. 31.</td><td>'23.8.31. 이후</td><td>'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td><td>불가</td></tr></table> ※ 단, 양성확인통지 및 격리참여자 등록은 보건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검체채취 일	확진일	확진자신 고일	양성확인통지일	생활지원 신청	'23.8.30. 이전	'23.8. 30.	'23.8.30.	'23.8.30.	가	'23.8.30. 이전	'23.8. 30.	'23.8.30.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23.8.30. 이전	'23.8. 30.	'23.8.31. 이후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23.8.30. 이전	'23.8. 31.	'23.8.31. 이후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23.8.31. 이후	'23.8. 31.	'23.8.31. 이후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검체채취 일	확진일	확진자신 고일	양성확인통지일	생활지원 신청																													
'23.8.30. 이전	'23.8. 30.	'23.8.30.	'23.8.30.	가																													
'23.8.30. 이전	'23.8. 30.	'23.8.30.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23.8.30. 이전	'23.8. 30.	'23.8.31. 이후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23.8.30. 이전	'23.8. 31.	'23.8.31. 이후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23.8.31. 이후	'23.8. 31.	'23.8.31. 이후	'23.8.31.이후 양성확인통지 중단	불가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지원 신청 기한)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 (지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5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5판」의 규정을 따름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27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가급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을 권장하며,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권장 *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실시(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종료 및 시범사업 수가 적용 등)	▶ 삭제	- 단계 조정에 따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개요) 자율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위기관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 ** 광역자치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지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 **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 (기능) 자율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먹는 치료제 등),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개요) 자율치료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 - (운영시간) 자율 설정 -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생활지원금 등 공공한 사항 문의 대응.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 상황 대응 위한 의료기관·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29	4. 확진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및 발생보고 ○ (재검출) 확진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확정) 필요시,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	4. 확진 후 재검출 사례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확인 ○ (발생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감염병 환자 보고 등 록에서 재검출 선택 후 보고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확진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30	5. 방역조치	삭제	
Ⅵ. 실험실 검사관리			
34	3. 검체 운송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3. 검체 운송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35	4. 검사기관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37	5. 검사결과 보고 및 관리	5. 검사결과 보고 및 관리 삭제 4. 검사 오류 의심 시 조치 가. 개요 ○ (검사 오류) 검체 채취·취급·검사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u>타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요청하는 재검사는 해당하지 않음</u> ▶ (검사 오류 의심 사례의 예시) - 동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채취한 서로 다른 다수의 검체가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 - 동일한 검체에 대한 반복 검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 -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임상증상이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사례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기관별 역할 ○ (지자체) 검체 채취 단계를 포함한 검사 전 과정에 대한 1차 조사▶(오염 및 검체 뒤바뀔 가능성, 역학적 연관성 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1차 조사의 예시) - 검체 채취 상황 점검(장갑 교체, 청소, 소독, 검체 정보 기록, 검사 도구 취급 등 오염·뒤바뀔 발생 가능성 검토) - 의심 검체의 앞, 뒤 순서에 채취 또는 검사한 검체의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기관의 반복 검사 시행 여부 및 검사 결과 확인(필요시, 잔여 검체 활용한 재검사 시행) ○ (질병관리청) 심층 조사, 검사기관 점검·관리 등 다. 절차 및 방법 ①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사 종료 ▶ 피검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 피검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② 검사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지자체의 1차 조사 결과 검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보건소는 피검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 및 필요한 후속 조치 시행(환자 신고 정정 요청, 재발 방지 조치 시행 등) ③ 검사 오류가 의심되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지자체) 1차 조사 결과, 검토 의견 등 포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진단총괄팀)에 검토 요청(공문 송부) - (질병관리청) 지자체의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하여 검사 오류 가능성 검토 → 지자체에 검토 결과 통보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Ⅶ. 환경관리(소독·환기)			
38	◆ 기본방향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나 환자 거주 공간은 신속하게 소독 시행 ○ 일상적인 지역사회(공공장소 및 가정)의 예방적 소독 시행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병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 소독 시행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지침 참조 -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 - 「슬기로운 환기수칙-공기청정기편」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독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지침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Ⅷ. 자원 관리			
43	1. 사·도 병상배정 관리체계 구축 2. 병상 운영 원칙 3. 이송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서식			
48	서식2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49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52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삭제	(역학조사팀) - 전수역학조사 미실시로 삭제						
53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삭제	- 전수역학조사 미실시로 삭제						
54	서식 8 환자 건강 모니터링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57	서식 10 코라나19 집단사례조사서(참고)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부록36에 축약						
61	서식 13 방역조치 관련 석식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62	서식 14 소득 증명서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64	서식 16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삭제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종료						
67	서식 19. 환자 상태 기록지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74	서식 26. 검사 관리대장	삭제	- 수기 청구 중단으로 삭제						
75	서식 27. 검사 실적보고	삭제	- 수기 청구 중단으로 삭제						
76	서식 28. 진단검사비 청구서	삭제	- 수기 청구 중단으로 삭제						
부록									
81	부록 1.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정의 조항 추가 <table><tr><th>구분</th><th>법조항</th><th>주요 내용</th></tr><tr><td>정의</td><td>제2조</td><td>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td></tr></table>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86	부록 3. 격리참여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91	부록 7.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방법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93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구의 사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정보보호구 예시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구의 사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정보보호구 예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일부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 ¹⁾		●		●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²⁾		● (선택 사용 가능)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³⁾⁴⁾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		
장례	시신 접촉		●		●	●	
	시신백 이송, 관 운구	●			●		
청소·소독	청소·소독 ⁵⁾		●		●	●	●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삭제

※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 일회용 가운, 고글(안면보호구)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한다.
(출처)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core-practices/index.html

※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 일회용 가운, 고글(안면보호구)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한다.
(출처)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core-practices/index.html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1)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2)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 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4)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 5) 병실, 구급차 등 청소·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 삭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가능 - 일회용 가운, 고글(안면보호구)는 혈액, 체액, 분비물 및 배설물 접촉이 가능하거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점막·피부 보호 및 의복 오염을 막기 위해 착용 가능 * (출처) CDC's Core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for Safe Healthcare Delivery in All Settings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core-practices/index.html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결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106	부록 12. 소독 방법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12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16	부록 15.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18	부록 17.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20	부록 19.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123	부록 19. (참고)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표준 예시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130	부록 25 외국인 확진자 조사서 작성 원칙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33	부록 28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표-2.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	부록 28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표-2.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	-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및 발급 방법 현행화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발급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7.1~) 표3. 예방접종스티커	▶ 발급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7.1~) 표3. 예방접종스티커 삭제	
137	부록 31.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40	부록 34. 코로나19 입원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삭제	- 감염병 등급 조정
142	부록 36.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조사 참고사항	부록 36.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조사 참고사항 1. 추진방향 ○ 코로나19 집단발생 감염취약시설의 자진신고 또는 보건소(합동 전담대응팀)에서 인지할 경우, 시설 관할 보건소에서 노출 위험 상황평가 후 필요 시 현장 대응 - 예방 감시·신속 대응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시설·시군구/보건소와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시·도는 감시, 예방, 역학조사, 후속조치 등 보건소 활동을 지원 2. 대비·대응체계 구성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 부록 36과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전체를 보완하여 수정함 - 이외 부분 모두 삭제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시·군·구 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 상황보고 ⇕ 지원협조 시·도 (현장조사·대응지원팀) 상황공유 ⇕ 지원협조 질병관리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지원팀) 상황공유 ⇕ 지원협조 질병관리청(역학조사 분석담당관) 상시정보 공유체계 유지 ⇔ 관리 / 협조 ⇒ 지원 ⇒ 감염취약시설(3종) 지원 ⇕ 협조 감염예방관리 지원기구 지원 ⇕ 협조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예방관리사업 운영 [활용 자원 예]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3종)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 구성·운영 ▶ (평시)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적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 방역물자 지원, 감염취약시설 대상 집단발생 현황 통계관리, 감염관리 현황점검, 감염관리 교육 및 행정지도 등 ▶ (대규모 집단발생/확진자 지속발생) 상황평가 후 필요 시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 역학정보 등록 및 관리, 시도 지원 요청 및 시설 지원·관리계획 마련 ○ (시·도)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지원팀, 시·도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현황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통계관리, 감염관리 현황점검 지원, 감염관리 교육 및 행정지도 협조 등 ▶ 현재 운영중인 권역/시·도 단위 코로나19 감염병대응협의체와 연계하여 활동 ▶ (평시)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현황 감시, 감염예방관리 교육 훈련 ▶ (시·군·구 요청/심층조사 필요시) 후속조치 및 조사·분석 지원 2. 3. 단계별 기관별 세부역할 ○ (상황평가·기획) 기초정보 바탕 신속한 상황평가 회의 및 필요 시 조사 계획 수립 ▶ 보건소 : 노출 상황평가▶ ▶ 위험평가,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필요 시 현장조사 계획 논의(시·군·구 합동전담대응팀) ▶ 시·도 : 방역상황에 따라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현장조사 지원, ‘감염예방 관리지원기구’ 협조·운영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필요 시 현장조사 및 위험평가 지원 ○ (현장조사·대응) 필요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대응조치 ▶ 기본 준비사항 및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조사(발생률, 치명률 등) 및 정보 수집을 통해 현장조사 양식에 맞게 작성 ▶ 현장조사를 통해 노출 상황, 입원환자 상태, 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향후 관리 계획 수립 [현장조사 양식 예시] <table><tr><th></th><th>A</th><th>B</th><th>C</th><th>D</th><th>E</th></tr><tr><td>1</td><td colspan="3">기본정보</td><td colspan="2">시설 이용 정보</td></tr><tr><td>2</td><td>이름</td><td>주민등록번호</td><td>신분</td><td>신분상세</td><td>근무/입원 장소</td></tr><tr><td>3</td><td></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d></td></tr><tr><td>5</td><td></td><td></td><td></td><td></td><td></td></tr><tr><td>6</td><td></td><td></td><td></td><td></td><td></td></tr><tr><td>7</td><td></td><td></td><td></td><td></td><td></td></tr><tr><td>8</td><td></td><td></td><td></td><td></td><td></td></tr><tr><td>9</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A	B	C	D	E	1	기본정보			시설 이용 정보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	신분상세	근무/입원 장소	3						4						5						6						7						8						9						
	A	B	C	D	E																																																										
1	기본정보			시설 이용 정보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	신분상세	근무/입원 장소																																																										
3																																																															
4																																																															
5																																																															
6																																																															
7																																																															
8																																																															
9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접촉자 분류)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접촉자 관리) 방역상황 및 시설 여건 등 위험성을 평가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를 분리·관리 권장 ▶ 접촉자 관리공간은 분리하여 운영 권고 ▶ 환기가 잘 되며 동선분리가 원활한 관리공간*을 우선 사용 권고 * 각 병동 간 사용 공간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 필요 ▶ 검체채취장소 -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 채취, 자연환기인 경우 가급적 실외▶에서 검체 채취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으로 주변에 사람의 이동이 통제되는 장소 - (구역분리) 방역상황 및 시설 여건 등 위험성을 평가하여 “청결 구역”, “준청결구역”, “오염구역”으로 공간을 구별 관리 권장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공동)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준수 ▶ (오염구역)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용한 세탁물 보관 장소 등은 청결구역과 구분 *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만질 때에는 4종(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호구 ▶ (준청결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중간구역▶으로 보호구 탈의실 등 설치 * 보통 '전실'을 의미하며 개인보호구(4종)의 제공, 안전하게 탈의, 소독 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여야 함 ▶ (청결구역) 종사자 행정 업무구역 등으로 활용 ▶ (폐기물 등 환경관리) 생활 및 의료폐기물▶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후속조치) 집단발생 대응 및 지속 관리·상황보고 ▶ 감염취약시설 : 감염관리 컨설팅을 통한 시설 감염예방관리 역량 유지 ▶ 시·군·구/보건소 :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감시 지속, 추가 확진자 지속 발생(장기화) 시 중간점검 및 상황 재평가, 상황보고 ▶ 시·도 : 발생 시설 감염관리 지속 감시, 필요 시 대내·외 추가 지원·협조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필요 시 현장조사·위험평가 분석 지원, 역학정보 평가 관리	
151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부록 38.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 우선순위 대상 일부 조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tr><th>우선순위 검사 대상</th><th>증빙자료 예시</th></tr><tr><td colspan="2">만 60세 이상 고령자</td></tr><tr><td>- 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tr><tr><td colspan="2">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tr><tr><td>-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tr><tr><td colspan="2">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td></tr><tr><td>-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td><td>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td></tr><tr><td>-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td><td>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td></tr><tr><td colspan="2">[*]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td></tr><tr><td colspan="2">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tr><tr><td>-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td>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td></tr><tr><td>- 입영 장정</td><td>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td></tr><tr><td>-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td><td>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td></tr><tr><td colspan="2">[*]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td></tr><tr><td colspan="2">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td></tr><tr><td>-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td><td>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td></tr></table> [†] 유 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table><tr><th>우선순위 검사 대상</th><th>증빙자료 예시</th></tr><tr><td colspan="2">만 60세 이상 고령자</td></tr><tr><td>- 만 60세 이상 고령자</td><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td></tr><tr><td colspan="2">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td></tr><tr><td>-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td></tr><tr><td colspan="2">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td></tr><tr><td>-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td><td>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td></tr><tr><td>-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td><td>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td></tr><tr><td>① (환자) 입원 전</td><td rowspan="2">*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td></tr><tr><td>②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td></tr></table>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① (환자) 입원 전	*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②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확진자로부터 공유받은 확진 안내 문자,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팀에서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공문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인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① (환자) 입원 전	*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②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152	부록 39. 질병개요	부록 39. 질병개요 2. 발생현황 가. 국외 ○ '23.8.13.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769,483,224명 발생, 6,954,911명 사망 출처: WHO Dashboard('23.8.13.)	최근 자료를 반영하여 내용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table><tr><th>구분</th><th>28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28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44,370</td><td>193,210,684</td><td>659</td><td>2,958,886</td></tr><tr><td>유럽</td><td>80,436</td><td>275,849,815</td><td>741</td><td>2,246,573</td></tr><tr><td>동남아시아</td><td>5,075</td><td>61,200,084</td><td>75</td><td>806,639</td></tr><tr><td>지중해 동부</td><td>1,497</td><td>23,386,319</td><td>23</td><td>351,379</td></tr><tr><td>아프리카</td><td>1,220</td><td>9,546,776</td><td>5</td><td>175,420</td></tr><tr><td>서태평양</td><td>1,289,940</td><td>206,288,782</td><td>863</td><td>416,001</td></tr></table> A 전 세계 대륙별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WHO(8.13) 3. 병원체 및 병원소 가 병원체 ----- ○ (유전체 분석 결과) 가장 유연관계가 가까운 박쥐코로나바이러스(BCoV) 유전자와 96.2% 동일하였고, SARS-CoV-2 유전체간에는 높은 유사성(>99%) 확인 ▶ (참고문헌) Carmine Ceraolo, Federico M. Giorgi. Genomic variance of the 2019-nCoV coronavirus. J Med Virol. 2020 May; 92(5): 522-528 ○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901,002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공유(8.	구분	28일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28일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주	44,370	193,210,684	659	2,958,886	유럽	80,436	275,849,815	741	2,246,573	동남아시아	5,075	61,200,084	75	806,639	지중해 동부	1,497	23,386,319	23	351,379	아프리카	1,220	9,546,776	5	175,420	서태평양	1,289,940	206,288,782	863	416,001	
구분	28일 내 신규 발생현황	누적 발생현황	28일 내 신규 사망현황	누적 사망현황																																		
미주	44,370	193,210,684	659	2,958,886																																		
유럽	80,436	275,849,815	741	2,246,573																																		
동남아시아	5,075	61,200,084	75	806,639																																		
지중해 동부	1,497	23,386,319	23	351,379																																		
아프리카	1,220	9,546,776	5	175,420																																		
서태평양	1,289,940	206,288,782	863	416,001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25. 기준, GISAID) ▶ 17개(19.12.24.)→1,567개(20.4.30.)→1,467,158개(21.6.15.)→14,212,802개(22.12.15)→15,901,002(23.8.25) ▶ WHO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분류 및 모니터링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즉각적인 대응, 감시 및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주요 변이 바이러스(Variant of Concern, VOC)와 기타 변이 바이러스(Variant of Interest, VOI), 모니터링 변이(Variant Under Monitoring, VUM)로 분류 - 또한 동일 변이 내에서도 다양한 염기서열을 보유하며 계통을 형성함에 따라 BA.2, BA.5, XBB 등 세부계통명을 할당하여 모니터링 (참고: WHO. Tracking SARS-CoV-2 variants)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및 모니터링 - 질병관리청도 VOC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중으로, '21년 알파(B.1.1.7), 베타(B.1.351), 감마(P.1), 델타(B.1.617.2) 등을 지정하여 감시하였고, '2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모든 오미크론을 VOC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음 - 또한,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다양한 하위 세부계통으로 분류되어, 그 중 주요한 세부계통 변이를 별도 분리하여 모니터링(XBB.1.16, XBB.1.9.1, EG.5, XBB.2.3 등)하고 있음(8.25) 나. 병원소 ----- 다. 변이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B.1.1.7) 알파형은 2020년 9월 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도 전파되었고 전파력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바이러스(B.1.351) 베타형은 2020년 10월에 확인됨 -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P.1) 감마형은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온 여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행자들에서 확인되었으며,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 -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B.1.617.2) 델타형은 2020년 10월에 확인되었고, 알파형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을 보이며 입원 사례 증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행함 - 다국발 변이 바이러스(B.1.1.529) 오미크론형은 2021년 11월에 확인되었고, 델타형 대비 2~3배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재감염 가능성이 증가하나, 입원 및 중증도는 감소함 ○ 오미크론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다양한 세부계통으로 분류되고 있고, 전파력과 면역회피능이 증가한 세부계통이 출현하며 변이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음 - BA.2가 21년 11월에 확인되며 '22년 초 전 세계 확산 - 이후 BA.5(22년 2월), BA.2.75(21년 12월), BQ.1(22년 7월) 등이 확인되며 '22년에 유행함 - '23년 이후 재조합 오미크론 XBB(22년 8월)가 XBB.1.5, XBB.1.16, EG.5 등 다양한 세부계통으로 분류되며 전체 XBB 계열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21년 7월 델타, 22년 1월 오미크론 BA.1, 22년 3월 BA.2, 22년 7월 BA.5, '23년 1월 BA.2.75의 하위 세부계통인 B.1.1.529.1이 우세화되며 유행을 주도하였고, 이후 다수 XBB 세부계통(XBB.1.5, XBB.1.16, EG.5 등)의 점유 증가가 확인됨 ○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파력 증가, 중증도 증가, 검사미탐지, 치료제 감수성 감소,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 회피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하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 기반으로 수행되는 전장 유전체 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164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삭제)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23.8.18.). <추가>	신종변이바이러스 대응관련 매뉴얼 추가
문고 답하기(Q&A)			
169 ~ 170	병원체 정보 Q3, Q4, Q5, Q6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
173	3. 검사	3. 검사 Q1. 코로나19 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고,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서 검사,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 종류(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비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Q2. 더 이상 무료 검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더라도,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므로,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우선순위 대상이 일부 조정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한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우선순위(부록 38)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 관련 변경 사항 현행화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Q1. ~ Q21.	○ 또한,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건강보험과 국비(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코로나19 무료 PCR 검사 대상〉 <table><tr><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r><tr><td>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td><td>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td></tr></table> ○ 이러한 지원 대상 외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직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고(유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삭제	
179	4. 치료 및 예방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제9판)」 참조 Q4, Q5	4. 치료 및 예방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위중증 환자의 치료비(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 ▶ 세부내용은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참조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변경
181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삭제
182	6.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확진환자) Q1. ~ Q5.	6.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Q1. 확진자가 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23.5.31. 이전에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격리 의무) 및 '23.6. 1. 이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 시행일 이전에 양성 확인통지를 받고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된 사람(격리 권고)으로, 권고 격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4급) 시행일 이전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일 전일까지 양성확인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시행일 이후 확진자 양성확인통지 중단). Q1. ~ Q5.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185	8. 임신과 출산	전면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187	9. 코로나19와 영아 및 어린이	전면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188	10.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전면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190	11. 재검출 사례 Q2. 해외 확진력이 있는 입국자는 당시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나요? ○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관할 보건소에서 제출받은 해외 확진 당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재검출 사례 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으로 사례판정 후 환자 및 접촉자 관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 해외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분들은 서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확진 당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의 증명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Q3. 해외 확진력이 있는데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외에서 확진 및 완치 후, 국내 입국 후 확진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11. 재검출 사례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191	12. 기타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 전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정보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한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

쪽	현행(13-3판)	제14판 개정(안)	개정사유
	▶ (해외감염병 NOW) 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 (외교부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dev/main.mofa ▶ 방문 전 -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 (외교부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dev/main.mofa 삭제	
191	Q2. 해외에서 및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삭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수정